

## 우체국안전벨트보험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우체국안전벨트보험의 기초 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상품요약서 뒤에 있는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상품의 특이사항 및 보험가입 자격요건

#### ① 상품의 특이사항

Q : 우체국안전벨트보험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 우체국안전벨트보험의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 : 가입나이가 많거나 적거나에 상관없이 보험료가 동일합니다.
- 저가 보험료로 교통재해 고액보장 : 교통재해 사망시 최고 “2억 원”(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사망시)을 보장하여 드리며, 교통재해 장해시에도 최고 “1억 원”(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장해지급률 100% 장해시)을 보장하여 드립니다.
- 교통재해로 인한 각종 의료비 종합보장 : 교통재해로 인한 입원, 수술, 통원, 골절은 물론 외모수술 및 김스치료까지 각종 치료비를 종합적으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 휴일보장 강화 : 주5일 근무제, 레저문화 확산추세 등에 따라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사망 및 장해보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Q : 교통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책임준비금이 지급되는데, 책임준비금이란 무엇인가요?

A : 책임준비금이란 장래의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적립해 둔 금액입니다. 우체국안전벨트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책임준비금이 없거나 미미합니다.

#### ② 보험가입 자격요건

■ 보험종류 : 순수보장형

■ 보험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20년 만기	만15~70세	20년납	월납

■ 가입한도

60세 미만	60세 이상
1,000만 원 (고정)	500만 원 (고정)

■ 건강진단 여부 : 전건 무진단

###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항

#### ① 상품의 구성

주계약	+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선택)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선택)
-----	---------------------------------------

② 보험금 지급사유

아래 내용은 계약자가 가입하신 상품이 보장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약관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휴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억 원	
평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억 원	
휴일교통재해 재활치료자금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애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1억 원 × 해당 장애지급률	
평일교통재해 재활치료자금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애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5,000만 원 × 해당 장애지급률	
입원치료자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0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10일 이상 ~ 20일 미만	10만 원
		20일 이상 ~ 30일 미만	20만 원
		30일 이상 ~ 50일 미만	30만 원
		50일 이상 ~ 100일 미만	50만 원
		100일 이상 ~ 200일 미만	100만 원
		200일 이상	250만 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수술급부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신생물 근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00만 원
외모수술자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외모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외모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50만 원
골절치료자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30만 원
깁스치료자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 1회당)	10만 원
통원치료자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1만 원

- 주) 1.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3.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 중 동일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애지급률이 5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4. 입원치료자금의 경우, 동일 교통재해로 인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간주하여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 교통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최종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5. 수술급부금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수술급부금만을 지급합니다.
6. 외모수술자금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외모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외모수술자금만을 지급합니다.
7. 수술급부금 또는 외모수술자금 지급사유가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수술급부금과 외모수술자금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8. 동일한 교통재해로 인한 장애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9. 동일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골절치료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0. 깁스치료자금의 경우, 동일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깁스치료자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11. 통원치료자금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

가입대상	이륜자동차 운전자(소유자 포함)
부담보 범위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포함) 중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부지급

- 주) 1. 이륜자동차 운전자(소유자 포함)는 주계약과 함께 반드시 이 특약을 가입해야 함
2. 이륜자동차란
-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

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포함)를 말함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대상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지정대리청구인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

③ 일반적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고지의무(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체신관서에 피보험자의 과거의 질병,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종 및 기타 청약서에 질의한 사항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신관서는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 시까지 청약서상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계약체결시 체신관서가 정한 피보험자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그러나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계약의 효력

- 체신관서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체신관서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 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은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연체보험료에 소정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계약의 보험기간이 경과된 후의 부활(효력회복)은 불가능합니다.

#### ■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등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립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지급사유	신분증	도장	해 당 진단서	비고
사 망 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망시는 사망진단서,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경찰기관이 작성한 사고확인서 등</li> <li>장해시는 장해상태를 판정할 수 있는 진단서</li> <li>입원시는 입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수술시는 수술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외모수술시는 외모수술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골절시는 골절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li> <li>킵스치료시는 킵스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li> <li>통원시는 통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ul>
장 해 시	○	○	○	
입 원 시	○	○	○	
수 술 시	○	○	○	
외모수술시	○	○	○	
골 절 시	○	○	○	
킵스치료시	○	○	○	
통 원 시	○	○	○	
해 약 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금 등을 대리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보험금 대리 수령용 등)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본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은 2차 서류를 요구하거나 추가확인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li> </ul>				

#### ◆ 보험료 산출기초

##### ① 예정이율

Q : 예정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우체국안전벨트보험에 적용한 예정이율은 연복리 3.25%입니다.

##### ② 예정위험률

Q : 예정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교통재해사고가 발생하여 입원, 수술 하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20세	40세	60세
교통재해사망률	남자	0.000338	0.000338	0.000338
	여자	0.000112	0.000112	0.000112
교통재해장해발생지급률 (3~100%)	남자	0.000136	0.000136	0.000136
	여자	0.000084	0.000084	0.000084
교통재해장해발생률 (50% 이상)	남자	0.000065	0.000065	0.000065
	여자	0.000036	0.000036	0.000036
교통재해 장기입원 발생률	10일 이상~ 20일 미만	남자	0.021744	0.021744
		여자	0.025652	0.025652
	20일 이상~ 30일 미만	남자	0.009509	0.009509
		여자	0.010550	0.010550
	30일 이상~ 50일 미만	남자	0.004972	0.004972
		여자	0.004914	0.004914
	50일 이상~ 100일 미만	남자	0.002220	0.002220
		여자	0.001777	0.001777
	100일 이상~ 200일 미만	남자	0.000648	0.000648
		여자	0.000448	0.000448
	200일 이상	남자	0.000210	0.000210
		여자	0.000165	0.000165

구분		20세	40세	60세
교통재해수술률	남자	0.002478	0.002478	0.002478
	여자	0.001269	0.001269	0.001269
외모관련교통재해수술률	남자	0.000780	0.000780	0.000780
	여자	0.000454	0.000454	0.000454
교통재해골절발생률	남자	0.009916	0.009916	0.009916
	여자	0.004968	0.004968	0.004968
교통재해킵스치료발생률	남자	0.012498	0.012498	0.012498
	여자	0.005178	0.005178	0.005178
교통재해통원율	남자	0.812715	0.812715	0.812715
	여자	0.763521	0.763521	0.763521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배당

Q : 계약자배당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체신관서가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이익배당금으로 환원하여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② 과거 5년간 계약자배당 실적 (단위 : %, 백만 원)

2008		2009		2010		2011		2012	
기준율	금액	기준율	금액	기준율	금액	기준율	금액	기준율	금액
5.5	80,403	5.4	77,930	5.4	96,882	5.3	109,582	5.3	129,349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①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Q :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뭔가요?
A : 우체국보험은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 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체신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②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20년 만기, 전기납, 단위 : 원)

경과기간	남 자		여 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년	106,800	0	68,400	0
3년	320,400	0	205,200	0
5년	534,000	200	342,000	0
7년	747,600	200	478,800	100
10년	1,068,000	200	684,000	100
20년	2,136,000	0	1,368,000	0

주) 계약해지 시점에 미경과 선납보험료가 있는 경우 이를 위 금액에 가산합니다.

#### ◆ 보험용어 설명

- **보험약관** : 계약이 성립된 때부터 소멸될 때까지 체신관서와 계약자간의 권리, 의무조항을 명시한 규정
- **보험계약자** :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납입의 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
- **계약나이** : 청약 당시 피보험자의 만 나이. 다만, 1년 미만의 경우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세로 계산
- **보험료** :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계약자가 체신관서에 납입하는 금액으로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인 부가보험료로 구성
- **보험금** : 보험금 지급사유(피보험자 사망 또는 만기 등)가 발생한 경우 체신관서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 체신관서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 **보장개시일** : 계약사항의 보장이 시작되는 날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과는 다름
-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을 해지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적립해 둔 금액
- **해약환급금** : 체신관서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자가 계약을 해약할 때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는 금액